

규제연구 제25권 제2호 2016년 12월

가파른 최저임금인상의 고용 및 경제성장 효과

박기성*

본고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가져올 폐해를 고용과 경제성장 측면에서 분석한다. 2017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41 ~ 506천 명의 고용이 감소하고, 9,000원, 8,000원, 7,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각각 173 ~ 311천 명, 125 ~ 154천 명, 46~65천 명 감소한다. 노동시장의 최저가격인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15개 OECD 국가에 대한 추정에 의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연경제성장률이 0.51%포인트 하락한다. 2017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면 연경제성장률이 1.48%포인트 하락한다. 9,000원, 8,000원, 7,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경제성장률이 각각 1.11%포인트, 0.73%포인트, 0.36%포인트씩 떨어진다.

핵심 용어: 최저임금, 고용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kpark@sungshin.ac.kr)

** 유익한 논평을 주신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참석자들과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한다. 이 논문은 2016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접수일: 2016/06/30, 심사일: 2016/07/05, 게재확정일: 2016/10/01

I. 서론

여야 정치권은 현행 6,03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각각 9,000원,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4·13총선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노동계는 벌써 작년에 올해의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내년의 최저임금을 정해야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가파른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듯하다. 본고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가져올 폐해를 고용과 경제성장 측면에서 분석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Neumark and Wascher(2006)에 집대성되어 있다. 이 논문(monograph)에 따르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구들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 대해 음의 고용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줄인다는 증거는 압도적이다.

Card and Krueger(1994)는 1992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4.25에서 \$5.05로 인상한 미국 뉴저지주와 인상하지 않은 인접한 펜실바니아주의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의 고용을 인상 전후하여 비교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Neumark and Wascher(2000)는 Card and Krueger(1994)가 사용한 전화로 조사한 자료(telephone survey) 대신에 거의 같은 음식점들의 임금대장(payroll) 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켰음을 보였다.

한국에서도 주된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신규로 채용할 근로자수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¹⁾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추정된 최저임금의 고용 감소효과를 사용하여 최저임금이 9,000 ~ 10,000원

1)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예: 이병희 2008).

으로 인상될 경우 고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추정한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먼저, 다음 장에서는 2016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의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최저임금의 수준을 가늠해 본다. III장에서는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를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실제적인 최저임금액에 따라 고용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추정한다. IV장에서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OECD 15개국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후 한국에서 구체적인 최저임금액이 경제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추정한다. V장에서는 요약과 더불어 결론을 맺는다.

II.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한국에서 전체 근로자(피용자)의 임금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이 매년 8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이고 가장 최근 자료는 2015년 8월 자료이다.²⁾ 취업자는 종사상지위(從事上地位)에 따라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피용자(employees) 또는 임금근로자(wage and salary workers)는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를 총칭한다. 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피용자는 19,312천 명이다.

2015년 자료로부터 2016년 임금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임금상승률의 예측치가 필요하다. 임금상승률은 실질경제성장률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하고 취업자증가율을 빼서 구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수정하여 발표한 2016년 실질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는 각각 2.8%와 1.2%이고(한국은행 2016), 한국노동연구원의 취업자증가율 예측치는 1.3%이므로(김복순 2016) 임금상승률 예측치는 2.7%가 된다. 2016년 임금을 2015년 임금의 102.7%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피용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3,267원이고 중위임금은 10,642원이므로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은 평균임금의 45.5%이고 중위임금의 56.7%이다.³⁾ <표 1>은 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2)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임금근로자가 총 1,500만명 정도로 나오는 등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통계이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기본급 + 통상적수당)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통계를 외부에 제한적으로만 제공한다.

3)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식과 동일하게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였다.

근로자의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 근로자의 15.2%인 2,938천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이다. 미만 근로자의 67.0%가 종업원 9인 이하 영세·소규모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임시근로자의 35.1%, 일용근로자의 42.8%가 미만 근로자이다. 미만 근로자의 63.5%가 여성이다. 19세 이하의 66.3%, 20 ~ 24세의 34.1%, 60세 이상의 44.1%가 미만 근로자이다. 고졸이하의 23.1%, 전문대 재학, 휴학, 중퇴자의 34.8%, 4년제 대학 재학, 휴학, 중퇴자의 37.0%가 미만 근로자이다. 미만 근로자의 21.5%와 16.3%가 각각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9.5%와 9.3%가 각각 사업지원과 보건복지에 종사하고 있고 9.5%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영세·소규모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므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논의에 앞서 현재의 최저임금이 잘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표 1〉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분포(2016년)

(단위: 천명, %)

		근로자수(A)	미만자수(B)	미만자구성비	미만율(B/A)
전 체		19,321	2,938	100.0	15.2
규모	1 ~ 4인	3,611	1,260	42.9	34.9
	5 ~ 9인	3,410	709	24.1	20.8
	10 ~ 29인	4,307	556	18.9	12.9
	30 ~ 99인	3,732	276	9.4	7.4
	100 ~ 299인	1,862	85	2.9	4.5
	300인이상	2,390	52	1.8	2.2
종사상 지위	상용	12,675	489	16.7	3.9
	임시	5,106	1,794	61.1	35.1
	일용	1,531	655	22.3	42.8
성	남성	10,878	1,074	36.6	9.9
	여성	8,434	1,864	63.5	22.1
연령	19세이하	209	134	4.7	66.3
	20 ~ 24세	1,284	444	15.1	34.1
	25 ~ 29세	2,061	196	6.7	9.5
	30 ~ 39세	4,814	257	8.7	5.3
	40 ~ 49세	4,887	406	13.8	8.3

$$\text{시간당 임금} = \frac{(\text{세금공제 전}) \text{ 월평균 임금(보수)}}{30.4} \times \frac{7}{\text{주근로시간}}$$

	50 ~ 54세	2,233	292	9.9	13.1
	55 ~ 59세	1,768	297	10.1	16.8
	60세이상	2,057	907	30.9	44.1
학력	고졸이하	8,662	2,004	68.2	23.1
	전문대졸	2,809	200	6.8	7.1
	전문대재학,휴학,중퇴	378	132	4.5	34.8
	대학졸이상	6,538	261	8.9	4.0
	대학재학,휴학,중퇴	925	342	11.7	37.0
산업	A.농림어업	125	62	2.1	49.8
	B.광업	14	0	0.0	0.0
	C.제조업	4,009	279	9.5	7.0
	D.전기가스업	91	1	0.0	1.0
	E.폐기물환경	83	3	0.1	4.2
	F.건설업	1,388	114	3.9	8.2
	G.도소매업	2,235	479	16.3	21.5
	H.운수업	783	94	3.2	12.0
	I.숙박음식업	1,426	632	21.5	44.3
	J.정보서비스	714	26	0.9	3.6
	K.금융보험업	751	25	0.8	3.3
	L.부동산임대	363	86	2.9	23.7
	M.기술서비스	910	20	0.7	2.2
	N.사업지원	1,166	278	9.5	23.9
	O.공공행정	950	141	4.8	14.8
	P.교육서비스	1,458	105	3.6	7.2
	Q.보건복지	1,695	273	9.3	16.1
	R.예술여가	289	79	2.7	27.2
	S.기타서비스	781	197	6.7	25.2
	T.가구내활동	64	45	1.5	70.4
U.국제외국	19	0	0.0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5년 8월.

III.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1988년 462.5원(1그룹; 487.5원 2그룹)에서 출발하여 2016년 6,030원으로 28년 동안 13.0배(12.4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9.6%(9.4%)씩 인상되었다. 지난 4·13 총선을 전후하여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앞 다투어 공약하였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심대한 감소를 초래한다. [그림 1]은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를 보여준다. 경쟁시장의 임금은 W_0 이지만 최저임금이 W_m 으로 설정되면 고용은 E_0 에서 E_m 으로 감소한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율 $\left(\frac{E_0 - E_m}{E_0}\right)$ 은 노동수요곡선(D)의 탄력성(elasticity of labor demand with respect to wage)에 임금상승률 $\left(\frac{W_m - W_0}{W_0}\right)$ 을 곱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W_m 보다 더 높아지면 고용감소는 더 커진다.

최저임금이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 10,000원으로 인상되면 고용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그림 1]의 노동수요 탄력성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안 받았다가 받게 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수요 탄력성(최저임금 탄력성)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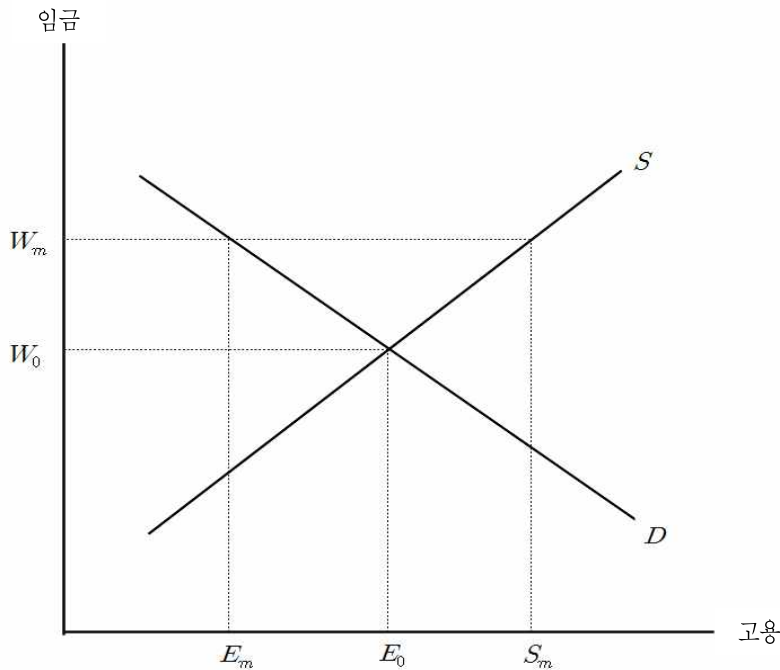
남성일(2008)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2007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최저임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132개 아파트단지 경비근로자들에 대한 2005 ~ 2007년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는데,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월평균임금은 10.9% 상승하였고 최저임금 탄력성은 -0.035 ~ -0.041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노동수요 탄력성은 -0.312로 추정하였다. 김대일(2012)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8 ~ 2010년) 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 탄력성을 대략적으로 -0.5 ~ -0.6으로 추정하였다.⁴⁾ 남성일(2008)에서 경비근로자의 2006 ~ 2007년 고용 감소율이 실제 3.9%였고 이것은 추정된 최저임금 탄력성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본고는 최저임금 탄력성으로 -0.039를 사용하고, 노동수요 탄력

4) Brown, Gilroy, and Kohen(1982)에 의하면 미국의 최저임금 탄력성은 -0.1 ~ -0.3이다. Neumark and Wascher(2000)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10%포인트 인상되면 고용이 2.1 ~ 2.2%포인트 감소한다고 추정하였다. 이인재 교수는 최저임금 탄력성이 장기에는 1인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보도된 자료(<http://www.fnnews.com/news/201605181755489367>)에 의하면 “독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인상” 심포지움에서 데이비드 쿠퍼 연구원은 최저임금 탄력성이 -0.05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는데 이 수치는 우리가 사용하는 최저임금 탄력성 -0.039보다 절대값이 크다.

성으로 -0.312 를 사용한다.

2017년에도 임금이 2.7% 상승한다고 가정한다. 2017년 10,000원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13,625원의 73.4%이고 중위임금 10,929원의 91.5%이다. 2017년 임금이 6,030원 초과 10,000원 미만인 근로자는 6,168천명이므로 최저임금 탄력성 -0.039 를 사용하면 241천명 ($=6,168,000 \times 0.039$)의 고용이 감소한다. 이 6,168천명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7,922원이다. 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10,000원이 적용되면 평균적으로 7,922원에서 10,000원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므로 26.2% 상승하는 것이다. 노동수요 탄력성 -0.312 를 사용하면 8.2% ($=26.2 \times 0.312$)인 506천명 ($=6,168,000 \times 0.082$)의 고용이 감소한다.⁵⁾

〈그림 1〉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



출처: Brown, Gilroy, and Kohen(1982).

5) 보다 엄밀하게는 이 6,168천명의 임금을 적당한 구간들로 나누어 각 구간에 그 구간에서의 노동수요 탄력성을 적용해야 하나, 이들의 임금분포를 확인해보니 거의 균일하며(almost uniformly distributed) 구간별 노동수요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 구한 값이다.

<표 2>는 2017년 최저임금이 9,000원, 8,000원, 7,000원일 경우 각각에 대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된 고용감소를 보여준다. 최저임금이 9,000원일 경우 173 ~ 311천명 고용이 감소한다. 8,000원일 경우 125 ~ 154천명 고용이 감소한다. 7,000원일 경우 46 ~ 65천명 고용이 감소한다. <표 2>는 2016년의 최저임금 6,030원 미만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의 추정이므로 이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새롭게 받게 되면 고용감소는 <표 2>의 추정을 상회할 것이다.

<표 2> 2017년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

최저임금	10,000원	9,000원	8,000원	7,000원
평균임금 대비 (13,625원)	73.4%	66.1%	58.7%	51.4%
중위임금 대비 (10,929원)	91.5%	82.3%	73.2%	64.0%
최저임금 탄력성 (-0.039)	241천명	173천명	125천명	65천명
노동수요 탄력성 (-0.312)	506천명(8.2%)	311천명(7.0%)	154천명(4.8%)	46천명(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5년 8월.
출처: 저자 추정.

IV. 최저임금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

경제성장률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최고가 되고 지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질수록 낮아진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최저가격(price floor)이므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어 경제성장률은 하락한다.

<그림 2>는 198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최저임금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다. 특히 경제위기였던 1998년을 제외하면 뚜렷한 부(負)의 관계를 알 수 있다.⁶⁾ <그림 3>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6) 상관관계계수는 -0.360(유의수준 0.071)이고 1998년을 제외하면 -0.648(유의수준 0.001)이다.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동일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⁷⁾

이 관계가 다른 국가에도 일반적으로 성립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Kim and Park(2015)의 추정 방법을 사용한다. Kim and Park(2015)은 노동소득분배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고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 대신에 최저임금수준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34개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980년부터 2008년까지 불변구매력평가 불변가치 일인당 국내총생산(per capita GDP based on constant purchasing power parity, measured by 2005 US dollars),⁸⁾ 출산율, 교육년수, 투자율, 정부소비율, 무역의존도, 물가상승률 자료가 있는 국가는 24개국이다.⁹⁾ 이중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스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는 최저임금제가 없었다.¹⁰⁾ 오스트리아는 전국적 단체교섭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단체교섭 대상 밖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OECD에 최저임금을 보고하지 않았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보고한 국가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 등 15개국이다. 이 국가들에 대해 최저임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것이 <표 3>이다.

이 표에서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의 연증가율이다. 통제변수는 전년도 국내총생산의 로그((lagged logarithm of per capita GDP), 출산율의 로그, 교육년수, 투자율, 정부소비율, 무역의존도, 물가상승률이다. 그리고 각 연도 및 국가 더미(dummies)를 사용하여 연도 및 국가 고정효과((country- and year-specific fixed effects)를 통제하였다. 이 두 종류의 고정효과 더미들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이 누락되어서 생기는 누락변수 편(bias)을 많이 완화한다.

<표 3>의 열 (2)에는 열 (1)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추가된다. 열 (2)에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의 추정계수는 -0.051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추정계수에

7) 상관관계계수는 -0.343(유의수준 0.086)이고 1998년을 제외하면 -0.638(유의수준 0.001)이다.

8) 이하에서 국내총생산은 불변구매력평가 불변가치 일인당 국내총생산(per capita GDP based on constant purchasing power parity, measured by 2005 US dollars)이다.

9) 투자율은 총자본형성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이다. 정부소비율은 정부의 최종재소비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이다. 무역의존도는 수출과 수입의 합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이다.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다. Barro and Lee의 통계자료에는 교육년수가 매 5년마다 추정되어 있어서 그 사이를 내삽법(interpolation)으로 채웠다.

10) 독일은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의하면 최저임금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51%포인트 하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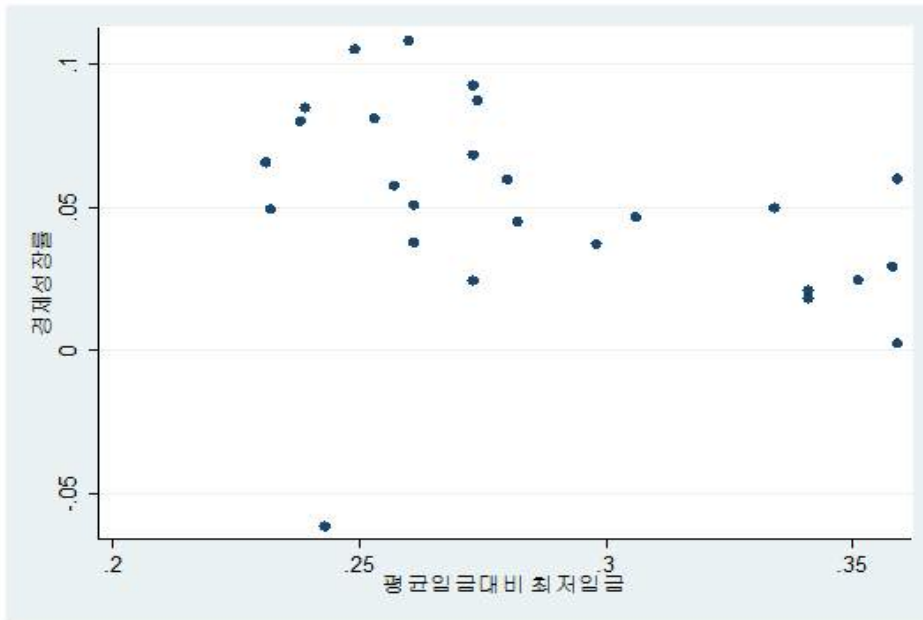
2017년 최저임금을 6,03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4.3%에서 73.4%로 29.1%포인트 높아지므로 경제성장률이 1.48%포인트 하락한다. <표 4>는 최저임금을 9,000원, 8,000원, 7,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각각 1.11%포인트, 0.73%포인트, 0.36%포인트씩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열 (2)에서 전년도 국내총생산 로그의 추정계수가 -0.074이다. 이것은 열 (2)의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경제가 수렴하는 속도(conditional convergence rate)가 연 7.4%라는 것을 의미한다.¹¹⁾ 이 수렴 속도는 국가 고정효과가 통제되고 있으므로 국가 간의 평균적인 수렴 속도가 아니고 한 국가의 시간이 지남에 따른 수렴 속도이다. 그러므로 이 수렴 속도는 한 국가가 균제상태(steady-state)로 얼마나 빨리 수렴하는가를 알려준다. 이 수렴 속도에 근거하면 반감기(half-life)는 9.4년이다.

다른 변수들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보면, 출산율이 낮을수록, 투자율이 높을수록, 정부소비율이 낮을수록,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이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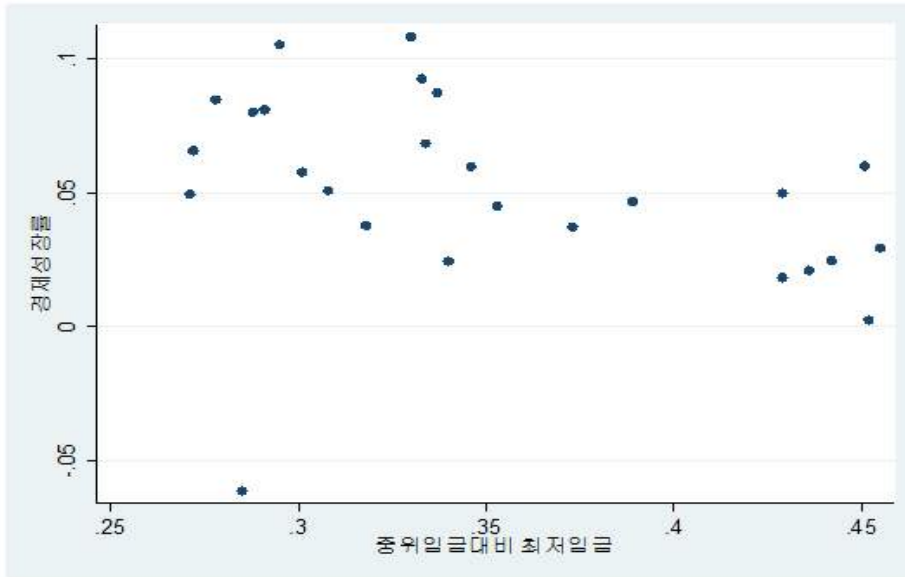
11) Barro(2012)는 이런 식의 회귀분석에서 Hurwicz(1950) 류의 편의(Hurwicz-type bias)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 편의는 국가 고정효과 더미와 더불어 종속변수의 시차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면 그 시차변수의 추정계수가 하향편의될(downward biased) 수 있고 따라서 수렴 속도(convergence rate)가 상향추정될(overestimated)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경제성장률의 시차변수와 관련성이 높은 전년도 국내총생산의 로그가 독립변수로 사용되어 이것의 추정계수가 하향편의될 수 있고 이 추정계수로부터 추정되는 수렴 속도가 상향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수렴 속도의 추정이 아니고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므로 전년도 국내총생산의 로그를 회귀분석의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그리고 전년도 국내총생산의 로그를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 간의 각 추정계수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제외한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추정계수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이다.

〈그림 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성장률(한국)



자료: OECD 2015년 5월 다운로드.

〈그림 3〉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성장률(한국)



자료: OECD 2015년 5월 다운로드.

〈표 3〉 경제성장률의 회귀분석

	(1)	(2)
전년도 국내총생산의 로그	-0.074*** (0.012)	-0.074*** (0.012)
출산율의 로그	-0.037*** (0.010)	-0.036*** (0.010)
교육년수	-0.0033 (0.0021)	-0.0028 (0.0021)
투자율	0.310*** (0.039)	0.291*** (0.040)
정부소비율	-0.275*** (0.087)	-0.282*** (0.087)
무역의존도	0.026*** (0.0061)	0.027*** (0.0062)
물가상승률	-0.226*** (0.035)	-0.218*** (0.035)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	-0.051** (0.025)
R^2	0.631	0.636
국가수	15	15
표본수	383	383

주: 1)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 더미가 포함됨.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3) ** < 0.05, *** < 0.01.

자료: OECD 2015년 5월 다운로드.

〈표 4〉 최저임금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

최저임금	10,000원	9,000원	8,000원	7,000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증가(%포인트)	29.1	21.8	14.4	7.1
경제성장률 하락 (%포인트)	1.48	1.11	0.73	0.36

자료: OECD 2015년 5월 다운로드.

출처: 저자 추정.

V. 결론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피용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3,267원이고 중위 임금은 10,642원이므로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은 평균임금의 45.5%이고 중위임금의 56.7%이다. 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는 총 근로자 19,321천명의 15.2%인 2,938천명이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영세·소규모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므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논의에 앞서 현재의 최저임금이 잘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낮은 임금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킨다. 의도는 선하지만 노동시장에 인위적인 최저가격(price floor)으로 작동하여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근로자를 내보내는 반응을 하게 한다.

2017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안 받았다가 받게 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수요 탄력성(최저임금 탄력성)을 -0.039 로 하면 241천명의 고용이 감소하고 노동수요 탄력성을 -0.312 로 하면 506천명의 고용이 감소한다. 9,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 탄력성을 -0.039 로 하면 173천명의 고용이 감소하고 노동수요 탄력성을 -0.312 로 하면 311천명의 고용이 감소한다. 2017년 최저임금을 8,000원과 7,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고용은 각각 125 ~ 154천명과 46 ~ 65천명 감소한다.

경제성장률은 자원배분이 효율적일 때 최고가 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질수록 하락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최저가격이므로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하여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15개 OECD 국가에 대한 추정에 의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연경제성장률이 0.51%포인트 하락한다. 2017년 최저임금을 6,03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4.3%에서 73.4%로 29.1%포인트 높아지므로 연경제성장률이 1.48%포인트 하락한다. 2017년 최저임금을 9,000원, 8,000원, 7,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경제성장률이 각각 1.11%포인트, 0.73%포인트, 0.36%포인트씩 떨어진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크게 감소시키므로 그들에게 특히 재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증대하여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초래하므로 경제 전체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대일,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 Vol. 35, No. 3, 2012, pp. 29-50.
- 김복순, 「2015년 임금동향과 2016년 임금전망」, 『노동리뷰』, 4월 (통권 제133호), 2016, pp. 9-25.
- 남성일,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Vol. 31, No. 3, 2008, pp. 1-19.
- 이병희, 「최저임금의 고용유지 및 취업 유입 효과」, 『산업노동연구』, Vol. 14, No. 1, 2008, pp. 1-23.
- 한국은행, 「2016년도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2016년 4월.
- Barro, Robert J., “Convergence and Modernization Revisited,” NBER Working Paper No. 18295, 2012.
- Brown, Charles, Gilroy, Curtis, and Kohen, Andrew,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 1982, pp. 487-528.
- Card, David, and Krueger, Alan B.,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84, 1994, pp. 772-792.
- Neumark, David, and Wascher, William,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90, 2000, pp. 1362-1396.
- Neumark, David, and Wascher, William,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Review of Evidence from the New Minimum Wage Research,” NBER Working Paper 12663, 2006.
- Hurwicz, Leonid, “Least-Squares Bias in Time Series,” In Tjalling C. Koopmans, ed., *Statistical Inference in Dynamic Economic Models*, New York: Wiley, 1950.
- Kim, Yong Min, and Park, Ki Seong, “Labor Share and Economic Growth in Advanced Countries.” Working Paper, 2015.

Employment and Growth Effects of Minimum Wage Hike

Ki Seong Park

This paper analyzes the harmful effects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brought by the minimum wage hike. If the 2017 minimum wage is raised to 10,000 won, the employment decreases by 241 ~ 506 thousands. If it is raised to 9,000, 8,000, and 7,000 won, the employment decreases by 173 ~ 311, 125 ~ 154, and 46 ~ 65 thousands, respectively. We have an estimation for 15 OECD countries: The economic growth rate decreases by 0.51 % points as the ratio of minimum wage to the average wage increases by 10 % points. According to this, if the 2017 minimum wage is raised to 10,000 won, the annual economic growth rate decreases by 1.48 % points. If it is raised to 9,000, 8,000, and 7,000 won, the rate decreases by 1.11, 0.73, and 0.36 % points, respectively.

Key words: Minimum Wage, Employment Decrease, Growth Rate Drop

